

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

최성욱 (이하 "본인"이라 함)은/는 주식회사 셀트리온(이하 "회사"라 함)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.

- 다 음 -

제 1조 (근로내용)

(1) 근무장소 : ㈜셀트리온 IBS 타워 21 층

(2) 수행업무 : 글로벌사업관리본부 및 글로벌재무 3팀 업무 보조

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의 근무장소에서 상기의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해당 팀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.

제 2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2025.01.13 부터 2025.03.02 까지 유효하며, 본 계약 체결 후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본인에 대한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3조 (근로시간)

- (1)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09:00 ~ 18:00 으로 한다. 다만, 유연근무제 및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무 형태별 별도로 정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각을 달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교통사정, 계절관계 및 기타 업무사정에 따라 전항의 시업 및 종업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.
- (2) 휴게시간은 12:00부터 13:00까지로 한다. 다만, 회사는 업무 사정 및 교대조 형태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(3) 회사는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추가근무나 주·야간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은 임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근무나 교대근무를 거절할 수 있다.
- (4) 2018. 07. 01 부터 적용되는 주 52 시간제도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 4조 (보 상)

- (1) 본인은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며, 시간급은 10,200 원이다.
- (2) 회사는 매월 1 일부터 15 일까지 해당되는 근로에 대해 당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며, 매월 16 일부터 말일까지 해당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.
- (3) 회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제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매월 21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다. 단, 입사일이 급여 산정 마감일(매월 15일 전후)이후인 경우 회사는 입사월의 급여률 입사월 익월 급여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(4)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.
- (5) 추가근무(연장근무, 심야근무, 휴일근무)에 대한 법정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.



HR-채용-001 근로계약서

(6) 구내식당, 통근버스, 사내 휴게시설의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, 그 외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다.

제 5조 (휴일 및 휴가)

- (1)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, 일요일(주휴일) 및 시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 28 조에 따른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. 다만,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상 허용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휴일을 달리할 수 있다.
- (2) 유급휴가는 1 년간 80%이상 출근한 경우 연 15 일을 부여하며,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%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
- (3)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6조 (책임과 의무)

본인은 근무 기간 중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 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. 본인은 시간제근로자에 관한 회사규정을 준수하며, 본인의 업무 및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7조 (고용의 종료)

본 계약은 2025.03.02 부로 자동 종료된다. 본인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14 일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. 또한 퇴사 전, 옮기고자 하는 회사명 혹은 기타 전문단체명과 맡게 될 직위를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알려주어야 한다.

제 8조 (비밀유지)

본인은 재직 중 알게 된 회사 일체의 사업상, 재산상의 비밀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단,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법령이나 정부기관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본 조에 따라 공개 등이 허용된 경우에도 대상 정보의 범위 및 내용을 포함하는 자세한 사실을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 회사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9조 (기타)

회사와 본인의 권리, 의무에 관하여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 및 회사의 관련 사규 및 지침 등에 따르며, 본 계약의 내용 중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, 그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25.01.13

"회사" 주식회사 셀트리온



"본인"

생년월일 : 9001 / 12 05

성 명:회생

서 명: <u>첫성</u>역